

6 (第94回—第4次)

<p>결정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용자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p> <p>同案件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에서는 실효성 있는 再活用產業의 육성을 통해 재활용촉진 및 쓰레기 감량을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중한 심사를 거쳐 同. 改正條例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p> <p>다음은 서울特別市造景施設管理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p> <p>本條例案은 都市綠化와 景觀向上을 위하여 녹지·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로수·녹지 보호의 공익적 기능을 항상시켜 품격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造景施設管理條例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p> <p>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는 서울特別市 행정구역 내 녹지·가로수로 하였으며, 관리청은 수목 수립 중에서 수형이 미려한 수목, 희귀수목, 대형목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호수의 관리자는 당해 보호수가 귀중한 자연재산인 것을 인식하여 보호수를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당해 보호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p> <p>동 조례안은 서울市 조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p> <p>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p> <p>그러면 서울特別市쓰레기줄이기와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造景施設管理條例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p> <p>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p>	<p>(「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p> <p>(參照)</p> <p>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중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과 폐기물관리법에서”를 “제품의 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로 한다.</p> <p>제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조같은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같은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6.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p> <p>7.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p> <p>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4조의2(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 ①시장은 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사업자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경우 법 제26조에 의거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자금의 융자·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③기타 자금의 융자에 대한 절차·조건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4조의3(융자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자금의 융자대상 및 금액 등을 선정·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③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p>
--	--

<p>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조 제1항 중 “제조자 등과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를 “제조자 등”으로 한다.</p> <p>제8조 제2항 중 “영 제41조”를 “영 제39조”로 한다.</p> <p>[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녹지·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녹지·가로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p> <p>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청”이라 함은 산림법 등 관련법령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가로수·녹지대를 관리하는 기관의장을 말한다.</li> <li>2. “가로수”라 함은 도시녹화·경관조성·공해방지 및 시민보건 등을 위하여 시가지 및 강변지역 등의 가로변에 조화있게 심는 나무를 말한다.</li> <li>3. “조경시설”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설치된 시설과 식물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나무, 잔디, 꽃, 지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li> <li>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설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li> <li>다.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 인공적인 시설물</li> </ul> </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녹지의 보호</p> <p>제 4 조(보호수의 지정) ①관리청은 산림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수형이 미려한 수목·희귀수목·대형목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보호수로 지정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p>	<p>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제 5 조(보호수 관리자의 의무) ①보호수의 관리자는 당해 보호수가 귀중한 자연재산이고 양호한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보호수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보호수의 관리책임자는 보호수를 이식 또는 수형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 6 조(유지관리의 지원) ①관리청은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당해 보호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관리청은 보호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상의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 7 조(수목 등의 관리대장) 관리청은 보호수·녹지·가로수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가로수 식재·관리</p> <p>제 8 조(가로수 식재) ①관리청은 도로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가로수의 계획적 식재와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p> <p>②가로수의 수종은 기후풍토에 적합하고, 병해충 및 공해에 강하며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로 한다.</p> <p>③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고, 가로수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도로에는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p> <p>④가로수를 심는 열은 보도폭에 따라 심되 단열심기를 원칙으로 하며, 보도폭이 넓은 지역은 여건에 따라 2열이상 심기를 할 수 있다.</p> <p>⑤가로수 식재는 가급적 수목활착이 양호한 식재기에 심어야 하며,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9 조(가로수 관리) ①가로수의 가지치기는 이를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조절을 위하여 늘어진 가지·겹쳐진 가지·병충해 고사지의 가지치기 등 부득이한 경우와 각종 공공안내판을 가리거나 통행 및 주변건물에 저촉되는 수목 또는 사고파해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가로수의 병해충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p>
---	--